

의안번호	제 77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6월 30일

#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75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은 2021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을 북부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농업기술원 분원 신축**은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성장동력인 농업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남부권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기반형 농업진흥기관을 배치하여, 남부지역 농업의 지속 성장 견인과 과수 등 지역특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부농업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교환은 청주시에서 도유지인 사직동 충혼탑 부지에 안보교육관 등 보훈가족과 청소년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와 청주시 공유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여 청주시에 해당 부지를 교환 처분하고 우리 도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 위 치 : 충북 충주시 안림로 239-50(안림동) 충주의료원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2.
- 규 모 : 1,751.35㎡(증축 1,208.16㎡, 개·보수 543.19㎡)

층별	계	증축(㎡)	개·보수(㎡)	비 고
계	1,751.35	1,208.16	543.19	
지상1층 (심뇌혈관센터)	922.19	379.0	543.19	심장내과, 신경외과, 뇌혈류검 사실, 뇌파검사실, 초음파실 등
지상2층 (재활치료센터)	829.16	829.16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통증치료실, 회의실 등

- 사 업 비 : 57.2억원(국비 28.6억원, 도비 28.6억원)
  - 공사비 53.7억원, 설계비 2.8억원, 기타 부대비 0.7억원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 외 28필지(용문중학교, 인근 사유지)
- 사업기간 : 2021. 6.~2022. 12.
- 신축규모 : 5,745㎡ ※ 부지면적 : 37,000㎡(영동군 부담)
  - 주요시설 : 연구동, 관리사, 온실, 농기계 및 농자재 창고

시설명	면적(㎡)	비 고
계	5,745	
연구동	3,000	연구개발 공간, 조직배양실, 성분분석, 대회의실 등
관리사	600	직원 거주 공간(20명 규모)
첨단온실	1,650	ICT기반 스마트 온실시설(5개동), 병해충연구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창고	495	농자재 및 농기계 등 보관, 작업실

- 사 업 비 : 103.3억원(도비)
  - 실시설계비 4.1억원, 건축비 98.1억원, 감리비 1.1억원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취득》

- 위 치 : 청주시 미원면 쌍이리 산27-1번지 등 17필지
- 사업기간 : 2021. 7. ~ 12.
- 규 모 : 토지 999,560m<sup>2</sup> ※ 감정평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시지가 : 1,741백만원
- 취득사유 :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유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 재산 취득(산림 경영 등)

□ 재산의 처분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처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21. 7. ~ 12.
- 규 모 : 토지 16,642m<sup>2</sup>
- 공시지가 : 383백만원 ※ 추정가액 35억원 내외
- 처분사유 :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 공모사업 선정 관련, '21.12월까지 청주시에 무상사용 허가

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2건	7,496.35	16,049,000				
	기타							
1	토지							
	건물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부지 내)	1,751.35	5,720,000	'22.12.	충주의료원 심·뇌 혈관센터 및 재활 치료센터 증축		증축
	기타							
2	토지							
	건물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91 외 28필지	5,745	10,329,000	'22.1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b>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